

## 합 병 보 고 공 고

주식회사 오뚜기(이하 "합병회사")와 오뚜기제유지주 주식회사(이하 "피합병회사")는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에서 "합병회사"는 "피합병회사"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"피합병회사"는 해산하기로 결의하고,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합병계약 체결일 : 2020년 06월 30일
2. 합병승인 이사회 : 2020년 07월 30일
3. 구주권 및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: 2020. 07. 31. ~ 2020. 08. 31.
4. 합병기일 : 2020년 09월 01일

2020년 09월 02일

"합병회사" : 주식회사 오뚜기  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(평촌동)  
대표이사 이강훈

"피합병회사" : 오뚜기제유지주 주식회사  
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506-27  
대표이사 정병상